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신 설)	제 39 조의 2(이사회의 결의사항) 다음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하여 그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의 주인을 얻어야 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2. 대표이사,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보수결정에 따른 이사의 보수 및 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4. 이사회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납입자본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 양수, 임대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회사의 계속에 관한 사항 10. 회사의 합병에 관한 사항 11.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3.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4. 법령, 시행령 등 법률로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15. 기타 일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2 항에 의거,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을 정관에 명확하게 규정화
(신 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5. 06. 23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